

수신 도내 사회복지시설·단체 대표

(경유)

제목 2026년 제2차 사회복지 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신청 안내

1.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시는 귀 시설·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협의회에서는 「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7조(인증관리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)」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관리하는 자원봉사관리자들을 대상으로 ‘사회복지 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’을 실시하오니 귀 시설·단체 업무담당자가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교육안내

일시	대상	장소	교육비
2026. 3. 24.(화) 14:00~17:00	시설·단체 종사자(4대보험 가입자) 중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총 25명	우리 협의회 2층 삼다수홀	회 원 15,000원 비회원 25,000원 (협의회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구분)

나. 제출서류 :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(www.4insure.or.kr에서 발급 가능)

※ 교육신청 후 협의회 이메일(jejubokji@hanmail.net)로 사전 제출(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는 교육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출력), 서류 미제출 시 교육 수강 불가

다. 신청기간 : 2026. 3. 13.(금) 09:00 ~ 3. 19.(목) 18:00

라. 신청방법 : [우리 협의회 홈페이지(www.jejubokji.net)]에서 신청자 본인 아이디로 접속 → [제주사회복지협의회 ‘교육신청’] → [‘2026년 2차 사회복지 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’ 신청] → [홈페이지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결제]

마. 기타사항

- 교육 불참 시 최소 3일 전에 연락해야 환불 가능(교육비 환불은 공문으로 요청)
- 관리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·단체의 경우, 먼저 관리센터 지정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회로 문의한 후 교육을 신청해야함

- 인증관리요원은 3년(36개월)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, 3년이 경과하여 vms 접근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재이수해야 함
 - 개정 전 규정(인증관리요원은 3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5년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인증관리요원은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함)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했으나 2025. 12. 31.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됨
-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는 경우 협의회로 사전에 연락해 주셔야 하며, 인증관리요원 임시등록 절차는 교육 당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



담당(과장) **강보연** 사회가치부장 **부서연** 사무처장 전결 **기승민**
 협조자
 시 행 제사협2026-403 (2026. 3. 11.) 접 수 ()
 우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-1(화북1동 1112-1) / www.jejubokji.net
 전 화 (064)726-5786 전송 (064)702-3383 / jejubokji@hanmail.net / 공개